별 첨

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

2019. 3. 19.

관계부처 합동

순 서

Ⅰ. 추진배경 및 경과 ····· 1

Ⅱ. 공공기관 안전관리 및 산재 현황 ····· 2

Ⅲ. 점검결과 및 문제점 ····· 4

Ⅳ. 비전 및 추진전략 ····· 7

Ⅴ. 중점 추진과제 ····· 8

1.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 경영 ····· 9

2.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 ····· 13

3.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 ····· 18

4.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 ····· 24

Ⅵ. 향후 추진계획 ····· 28

[붙임1] 안전관리 중점기관

[붙임2] 과제별 추진일정

[붙임3] 부처·기관별 추진과제

Ⅰ. 추진배경 및 경과

□ 추진 배경

○ 최근 **공공기관**의 작업장에서 **산재사고가 반복되면서 노동자 안전 확보**를 위한 **근본적인 대책 마련 필요**

- 특히, 태안화력발전소의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이후 **공공기관 작업환경에 대한 점검과 개선 요구 증대**

○ 공공기관 경영에서 **안전 우선 원칙을 확립**하고, 이 원칙을 **현장에 정착**시키기 위해 경영방식, 작업현장, 원·하청 구조, 안전의식 등 **종합적인 대책 추진**

◇ **대통령 주재 청와대 수석비서관·보좌관 회의**('18.12.17)

► "태안발전소 사고 등 안타까운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음. 원가절감을 이유로 **사용자 의무까지 바깥에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** 현상이 멈추지 않고 있음. 위험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**사업장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**해야 함"

◇ **故김용균씨 유족 등 면담**('19.2.18)

► "**공공기관 평가**에 있어 **생명과 안전이 제1의 기준**이 되도록 하겠음"

□ 추진 경과

○ '19.1~3월, **정부합동 TF***를 운영(국조실 주관, 8개부처)하여 주요 공공기관 작업장 **안전점검, 전문가 의견수렴 및 현장방문** 등 실시

* 국조실 주관, 기재부, 노동부, 국토부, 산업부, 환경부, 농식품부, 해수부

- 공공기관 **작업장 안전 TF 운영**(1.4~3.14) : 총괄 TF(6회), 6개 분과별 토론(제도·국토교통·에너지·환경·농업·항만분과, 15회)

- **주무부처 주관** 26개 공공기관 **안전점검**(1.7~2.15), **노동부 주관 불시점검**(1.14~1.29)

- **전문가 의견수렴**(학계·시민단체·노동계 등 9회) 및 **현장방문**(철도시설공단, 당진화력, 농어촌공사 등) (1.22~2.26)

○ **「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대책」을 관계부처 합동**으로 마련

*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토의(3.7)

Ⅱ. 공공기관 안전관리 및 산재 현황

1 공공기관 현황 및 안전관리 체계

□ **공공기관 현황**: 공공기관은 '18년 기준 총 338개

□ 안전관리 체계

○ **(관련법령) 산업안전보건법**과 **분야별 개별법*** **적용**

* (건설) 건설기술진흥법, (발전) 전기사업법, (광산) 광산안전법, (철도) 철도안전법 등

○ **(안전지침)** 공공기관 공통의 안전관리 지침은 없으나, **각 기관별 내부규정*** 등에 근거하여 작업장 안전관리 실시

* 전력분야 안전작업수칙, 철도안전관리체계기술기준, 항만시설물 안전점검지침 등

2 산재사고 현황

□ 최근 5년간 공공기관의 산재사고는 **전체 산재사고**(年 8만여명)의 **1.8%**, **사망자**(年 9백여명)는 **6.1% 수준**

○ 전체 공공기관의 산재사고 재해자는 '14년 1,602명에서 '17년 1,360명으로 감소 추세이나, **사망자**는 **年 50명 이상** 발생

	'14년	'15년	'16년	'17년	'18.1~9월
사고 재해자(명)	**1,602**	**1,557**	**1,508**	**1,360**	**1,165**
사망자(명)	**63**	**71**	**53**	**59**	**37**
부상자(명)	1,539	1,486	1,455	1,301	1,128

* 산업안전보건공단, 산재보험 요양승인 기준

<전체 산업현장>



<공공기관 작업장>



□ **사고사망자**는 유형별로는 **발주공사**, 규모별로는 **100인 미만 사업장**, 분야별로는 **국토교통·에너지**, 원인별로는 **추락**에서 **다수 발생**

* (유형[1]) 발주공사 85.2%(241명), 직영 12.0%(34명), 하청 2.8%(8명)
* (규모) 100인미만 57.6%(163명), 100~300인 25.4%(72명), 300인이상 17.0%(48명)
* (분야) 국토·교통 48.1%(136명), 에너지 32.2%(91명), 환경 8.1%(23명) 등
* (원인) 추락 35.3%(100명), 충돌 19.8%(56명), 감전 7.1%(20명) 등

<공공기관 사고사망자 발생현황('14~'18.9월)>

(단위 :명)

		계	국토·교통	에너지	환경	농업	항만	기타
발주공사(건설 등)		**241**	**114**	**75**	**22**	**12**	**6***	**12**
자체 작업장	직영	34	19	12	1	1	-	1
	하청	8	3	4	-	1	-	-
계		**283**	**136**	**91**	23	14	6	13

* 항만분야의 경우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포함

□ 공공기관 산재 **사망자**는 **특정 기관에 집중되어 발생**

* 전체 338개 공공기관 중 최근 5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관은 38개

○ 특히 LH, 도로·한전·철도·수자원공사, 농어촌·한수원 등 **산재사망 상위 10대 기관**에서 78.8%(223명)가 **발생**

* 공공기관 산재 사망자(명) : LH(43), 도로공사(39), 한전(39), 철도시설공단(27), 철도공사(23), 수자원공사(15), 농어촌공사(13), 한수원(9), 석탄공사(8), 서부발전(7))

⇨ **공공기관 산재 사고사망**의 **획기적 감축**을 위한 **대책**을 마련하고, **사고사망 상위 10대 기관**은 **특별관리**(기관별 별도대책 마련)

1) 발주공사: 도로·교량·아파트 등 구조물을 새로 만들어 설치하는 토목 및 건축공사
자체 작업장: 공공기관이 직영 또는 하청으로 제품을 생산(전기, 난방 등)하거나 서비스를 창출하는 작업장

Ⅲ. 점검결과 및 문제점

1 점검결과

□ **점검 개요**

○ **(안전점검) 주무부처 주관, 작업장 732개소 점검**

* 대상: 산재위험이 높은 LH, 한전 등 26개 주요 공공기관에서 선정
* 방식: 주무부처에서 점검반 구성(외부전문가(팀장), 공공기관, 근로자, 시민단체 등 참여)

○ **(불시점검) 노동부 주관, 작업장 21개소 점검**

* 대상: 위험도·규모 등을 고려하여 자체작업장 11개소, 발주 건설현장 10개소
* 방식: 노동부 주관 합동 점검반(근로감독관, 외부전문가, 안전보건공단 등 참여)

□ **점검결과 및 주요 조치내용**

○ **(안전점검) 작업장별 위험요소 4.6건**(총 3,346건) 확인 → 2,244건 현장 조치 완료, 나머지(1,102건)는 개선 조치중

분야	대상 기관	작업장	조치 결과
국토 교통	LH, 도로공사, 철도공사, 철도시설공단, 인천공항, 공항공사	6개 기관 총 212개	작업대 안전난간 미설치, 자재 낙하 위험 등 917건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
에너지	한전, 한수원, 발전5사, 한전KPS, 한난, 석탄공사	10개 기관 총 141개	개구부 덮개 미설치, 컨베이어벨트 협착위험 등 1,157건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
환경	수자원공사, 환경공단, 매립지관리공사	3개 기관 총 339개	토사 붕괴 위험, 밀폐공간 출입안전조치 미흡 등 1,103건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
농업	농어촌공사, 마사회, 가축방역지원본부	3개 기관 총 28개	전기기계 미접지, 도로 사면보강 구간 파손, 안전통로 미확보 등 99건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
항만	부산, 여수광양, 울산, 인천항만공사	4개 기관 총 12개	부두 출입통제 등 관리 미흡, 신호수 미배치 등 70건 위험요소 확인 및 조치

※ 주요 현장의견

► "건설장비에 의한 작업자 협착사고 방지를 위해 작업자 근접시 장비가 자동정지 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필요"(도로공사 건설현장)

► "사람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며, 현장에 맞는 안전교육을 근로자들에게 실시할 필요"(철도시설공단)

► "안전사고의 정확한 원인과 대책이 일선 현장까지 공유되지 않아 동일한 재해가 반복될 우려"(중부발전 신보령화력)

○ **(불시점검) 작업장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**을 **12.7건**(총 266건) 확인 및 **시정조치**(시정명령 230건, 사법 조치 68건, 과태료 3.2억원 등)

위반사항	개구부 추락위험 방호조치 미비(9건), 위험설비 안전검사 기준 미준수(19건),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대한 교육 미실시 등(49건),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직무 미수행(35건) 등
조치사항	시정명령(230건), 과태료(3.2억원), 부분작업중지(4개소), 사용중지(5대), 사법조치(68건)

※ 주요 현장의견

► "현장 또는 하청업체의 안전시설 개선 등에 대한 건의사항을 이행하는데 비용이 발생할 경우 임원진 등 결정권자에게 전달되지 않거나 거부되는 경우가 많음"(공통)

► "안전부서 기피, 잦은 인사로 안전분야 직원의 전문성 부족"(부산항만공사)

2 문제점

◇ **안전점검** 및 **전문가·현장 의견수렴, TF활동 결과**,

현재 공공기관 작업장의 산재사고는 ①**효율성 위주의 경영방식**, ②**작업 현장의 위험 방치**, ③**원·하청 구조에 따른 안전 책임의 사각지대**, ④**인프라 부족**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

□ **(경영 방식)** ①**체계적 안전계획 부재**, ②시설·전담인력 등 **안전투자 미흡**, ③내·외부 **참여 시스템 미작동**, ④**성과위주 경영평가** 등으로 안전에 관심 저조

* ①안전관리 기본계획 등 수립의무 없음 ②안전 담당 인력은 신규직원 50% 이상이고 보직기간도 1년 미만(한전) ③협력업체 건의반영이 저조(태안화력발전은 하청 개선요구 28건 처리에 11개월 소요) ④경영관리 분야(55점) 중 안전배점 2점

□ **(작업 현장)** ①**위험성 평가가 형식적 운영**, ②사전에 **사고를 차단**하는 **제도 미흡**, ③**위험환경 방치** 등으로 노동자는 위험에 노출

* ①위험성 평가를 서류위주로 실시 ②안전관련 긴급발주(수의계약) 불가, 위험시설 단독작업 ③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 안전설비 불량

□ **(원하청 구조)** ①공공기관의 **원청으로서 책임** 미흡, ②**공공입찰시 안전에 대한 고려 부족**, ③**안전관리자** 선임과 **안전관리비** 편성이 부족

* ①산재책임이 주로 협력업체에 귀속되어 위험 외주화 유인 상존 ②적격심사 낙찰제(300억원 미만 공사)에 안전평가 항목이 없음 ③안전관리자 선임과 안전관리비 편성기준이 협소

□ **(인프라)** ①경영진부터 현장 인력까지 **안전인식 취약**, ②**공공기관** 작업장에 대한 **안전점검 미흡**, ③공공기관 안전관련 **규정·통계 등 제도적 기반 취약**

* ①CEO·임원에 대한 안전교육 부재, 현장에서는 안전수칙을 요령으로 인식 ②공공기관은 감독대상에서 후순위(철도공사 등 일부만 점검), 공공기관 자체 점검도 미흡 ③체계적인 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 부재, 통계시스템 미비

⇨ **사람 존중의 가치**가 전 **사회적으로 확산**될 수 있도록 **공공기관**부터 **안전우선 시스템을 마련하고** 이를 위한 **인프라를 정비**

Ⅳ. 비전 및 추진전략

안전한 공공기관 일터 조성

목 표

◇ '22년까지 산재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(60%) 감축

4대 추진전략	14대 중점 추진과제
1.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 경영	1 (계획) 안전경영 추진체계 구축 2 (집행) 안전투자 대폭 확대 3 (통제) 참여형 통제 시스템 마련 4 (평가) 안전중심 경영평가 실시
2.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	1 (진단) 위험요소 진단체계 정비 2 (방식) 사고예방형 작업방식 도입 3 (환경)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
3.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	1 (도급) 원청의 책임 강화 2 (발주) 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 3 (관리) 현장 안전관리제도 정비 4 (고용)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
4.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	1 (인식) 안전 우선 인식·문화 확산 2 (점검) 현장 감독의 실효성 확보 3 (이행) 실행 체계 구축

≪ 공공기관 일터 변화의 모습 ≫

	현 재	변 화
기관 경영	• 수익 우선	• 안전 우선
작업 현장	• 보이는 위험만 처리	• 잠재된 위험도 발굴
협력 구조	• 위험을 전가	• 안전을 책임
안전인프라	• 민간에 뒤쳐짐	• 민간을 선도

Ⅴ. 중점 추진과제

<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강화 추진방향 >

1 **대책의 조속한 이행**을 통한 **가시적 효과 창출**

○ **안전관리 기본계획** 수립, **목표관리** 등 주요 시책을 담은 **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** 제정(3월)

○ **개정 산업안전보건법**('20.1.16 시행)·**건설기술진흥법**('19.7.1 시행)의 **공공기관 조기 이행**(4월)

○ 공공기관 **안전인력 충원 및 시설 투자 신속 추진**

2 **평가와 책임원칙 확립**으로 **공공기관의 안전에 대한 역할 강화**

○ 경영평가에서 안전에 대한 **배점 확대** 및 **평가방식** 강화

○ 중대재해에 귀책사유가 있는 **기관장 해임 건의** 추진

3 산업재해에 대한 **공공기관과 하청기업간의 책임 공유**

○ **협력업체 사망사고**를 **공공기관 사망사고**에 **통합·공개**

○ **협력업체 산재사고**를 **공공기관 경영평가**에 반영

4 공공기관 작업장에 **안전중심문화를 조성**하고 **민간으로 확산**

1 안전을 우선하는 기관 경영

과제 추진 방향

◈ 공공기관의 **경영 구조**를 수익위주에서 **안전 · 생명** 우선으로 전환

◈ 이를 위해 「**계획 – 집행 – 통제 – 평가**」의 전 단계에 걸쳐 **안전을 우선하는 프로그램** 도입

1 [계획] 안전경영 추진체계 구축

□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

○ **(계획수립) 공공기관**은 **안전관리 기본계획***을 **매년 수립**하여 **이사회 승인을** 받고 주무부처는 이행상황 점검<각 부처>

* 산재분석·예방대책, 안전교육, 작업장(하청·발주공사 포함) 안전관리 계획 등을 내용으로 주무부처 책임하에 수립

○ **(목표관리)** 산재위험이 높은 공공기관을 **안전관리 중점기관**[2]으로 지정, **매년 기관별 산재 감축목표를 설정**하고 주무부처가 관리 <기재부·각부처>

□ 안전경영시스템 인증 확대

○ **(안전경영 인증)** 안전관리 중점기관부터 **안전경영 시스템 인증***을 확대하여 **안전관리계획·활동 등의 적절성 여부**를 **확인**('19)<노동부>

* '계획수립–실행–점검–개선' 과정을 통해 지속적 안전보건 개선을 뒷받침하는 경영시스템

* (現) 자율 참여(현재 338개 공공기관 중 17개 기관 KOSHA 18001 인증)
→ (改) 안전관리 중점기관부터 인증 확대

- 발전5사·한수원·지역난방공사는 국제공인 인증(ISO 45001)*을 취득하여 **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경영시스템** 구축('19)<산업부>

*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경영분야의 최초 국제기구 공인 기준

2) 최근 5년간 2명 이상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산재현황, 위험업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결정한 기관('19년은 총 32개)

2 [집행] 안전투자 대폭 확대

□ 안전조직 강화 및 인력 확충

○ **(조직 강화)** 안전관리 중점기관에 **안전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관장**(또는 부기관장) **직속**으로 **설치**하고 **임원급으로 책임자 지정** <각 부처>

- **안전관련 분야 전공자 및 유경력자 채용, 일정기간 순환보직 배제**를 통한 안전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

* 석탄발전소의 경우 대부분 안전부서 근무를 기피, 신입사원 위주로 배치

○ **(인력 증원)** 공공기관 정원 협의·조정시 **시설 안전 및 재난 예방** 등 안전 분야 **적정인력**이 **부족**한 **기관부터 우선 확충**<기재부·각 부처>

* 위험작업장의 2인 1조 근무, 안전전담부서 강화, 재난대비인력 확충 등

- 주무부처는 소관 기관 안전조직 진단을 통해 **안전업무**에 대한 **적정인력 기준을 마련**하고, **기재부는 증원심의에 반영**<기재부·각 부처>

* 3월말까지 협의 완료 후 4월 이후 기관별 신규인력 충원 추진

□ 안전시설 투자 확대

○ **(시설투자 확대) 안전 관련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투자**를 적극 추진토록 **예산편성 지침 개정*** **및 경영평가 개선****<기재부>

* 2019년도 공기업·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반영('18.12.27일)

** 안전투자 확대에 따른 부채 증가는 부채비율(1점) 평가시 제외, '안전 및 환경' 지표 평가내용에 '안전관련 투자' 신설

○ **(중장기투자계획 수립)** 노후시설 개량, 설비 안전보강 등 **고위험·취약시설 투자**에 대한 **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**(5년 단위)

* 공공기관 '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작성지침'에 안전 관련 5개년 투자계획 작성에 필요한 기본방향 제시

3 [통제] 참여형 통제 시스템 마련

□ 외부참여 안전협의체 구성·운영

○ **(안전경영위원회 신설)**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**근로자·전문가** 등이 참여하는 **'안전경영위원회'**를 신설하여 안전경영 관련 심의기구로 운영(안전지침 제정, '19.3)<기재부·각 부처>

* ('19.4) 발전5사 → ('19.하) 안전관리 중점기관으로 확산

○ **(안전근로협의체) 작업장별로 원청 노사**로 구성되어 있는 산업안전위원회*를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**하청 노사**도 **참여**하는 **'안전근로협의체'**로 개편**하여 작업장 안전에 대한 원·하청간 협의를 강화(안전지침 제정, '19.3)<기재부·각 부처>

* 상시 100인(건설업은 총공사금액 120억원) 이상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의 중요 사항 심의·의결을 위해 노사 동수로 구성, 분기별 개최

** (現) 원청의 노사로 구성 → (改) 원·하청 노사로 구성, 산안법상 '산업안전보건위원회' 운영으로 갈음

□ 내부제안 제도 활성화

○ 공공기관 **직원 및 작업장 근로자**의 **내부 제안제도를 마련**하여 현장 수요를 반영한 제도개선 촉진(안전지침 제정, '19.3)<기재부·각 부처>>

< 내부 제안제도 절차(예시) >

근로자	→	안전부서	→	안전부서	→	실행부서
제안 제출		접수 ·심사		결과 통보		과제 시행

4 [평가] 안전중심 경영평가 실시

□ 경영평가 개편

○ **(안전배점 상향)** 경영평가 항목중 경영관리 분야의 **안전 지표**(재난 및 안전관리) **배점 상향**('18 : 최대 2점 → '19 : 최대 6점)<기재부>

○ **(안전지표 신설)** 안전관리 중점기관은 안전에 대한 책임 강화를 위해 기관별 **안전지표**(산업재해 예방 노력도) **별도 신설**<기재부>

○ **(평가방식 강화) 중대재해***이면서 산업안전보건법 등 **관련법령을 위반****한 경우, '재난 및 안전관리' 지표 평점을 **0점으로 처리**(적부평가방식 도입)<기재부>

* 사망자 1명 이상 발생사고 등 산업안전보건법령상 "중대재해" 개념 준용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§2 '중대재해'

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
②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
③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

** 산업재해(추락, 시설물 붕괴 등) 및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 위반 등

○ **(평가 전문성) 안전 전문기관**의 안전활동 수준 평가 결과를 **경영평가에 반영을 추진**하고 **경영평가단 구성시 안전 분야 전문가 확대**<기재부>

□ 기관장 책임 강화

○ **중대재해**이면서 **귀책사유***가 있는 **기관장, 관련 임원**에 대해서는 공운위 심의·의결을 거쳐 **해임 건의** 추진<기재부>

* 귀책사유 세부기준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마련

2 사고를 예방하는 작업 현장

과제 추진 방향

◈ 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체감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보이는 위험의 해소를 넘어 **잠재된 위험을 발굴·개선**

◈ 작업장의 「**위험진단 – 작업방식 개편 – 작업환경 조성**」의 전 과정에서 **사고를 예방**하기 위한 **제도 개선**에 집중

1 [진단] 위험요소 진단체계 정비

□ 위험성평가 강화

○ **(평가 관리강화)** 작업장 위험 **시설·설비 등 작업환경, 작업방식** 등에 대한 **위험성평가***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도록 관리('19.4~)<기재부·각부처>

* 작업장 유해·위험·인적요인 탐색·파악 → 위험성 결정 → 자발적 예방조치

- 공공기관은 **도급·발주 작업장**의 **위험성평가***를 **점검**(도급·발주 계약조건에 포함)하여 **부실한 경우 보완 조치**

* 기관 특성에 따라 임대차 계약관계에 있는 작업장도 포함(예: 항만공사)

- 위험성 평가·조치결과를 **주무부처**에 **제출**토록 하고, 이행여부를 경영평가에 참조하여 이행력 담보

* 최근 3년간 사망사고 발생 기관은 안전전문기관의 검토를 거쳐 주무부처 제출

○ **(업종별 공유체제 구축)** 공공기관의 주요 재해발생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**프로파일***을 **구축**하고,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**동종 공공기관과 공유**('19.하~)<노동부>

* 사고의 근본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RCA(Root Cause Analysis) 기법 등을 활용해서 사고의 직접원인(작업내용·조건)을 종합 조사하여 유형별로 DB화

□ 고위험 작업장 안전진단 실시

○ **(안전진단 명령) 산재사고가 지속 발생**하거나 **발생우려가 높은** 공공기관에 대해 **안전진단 명령 적극 실시**('19.4~)<노동부>

○ **(긴급 안전진단) 석탄발전 5개사**는 전문 외부기관을 통해 설비·시설 등 **전면적 안전진단을 긴급** 추진('19.4~下) <산업부>

* 작업조건·작업방법·유해위험 예방 등 안전관리, 안전장비 및 작업환경, 발전소 설계안전성 및 설비별 위험성평가 실시

- **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*** 활동을 통해 중대 재해사고의 **원인을 분석**하고 **재발방지 대책** 마련('19.3~)<노동부·산업부>

* 태안화력발전소 사망 사고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대책을 권고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(훈령 제정중)

2 [방식] 사고예방형 작업방식 도입

□ 작업근로자 보호 확대

○ **(단독작업 금지)** 위험이 있는 작업장의 **2인1조 근무**를 의무화하고, 기타 작업장에서 **신입 직원**(근속기간 6개월 미만)의 **현장 단독작업을 제한** ('19.4~)<각부처>

○ **(일요 휴무제* 시행) 일요일 공사를 제한**하되, 공사가 불가피한 경우 **구체적인 예외기준 마련**(건진법 개정, '19.하)<국토부>

* '18.10월부터 시범사업 추진중

○ **(기상이변 작업중지) 폭염 등 이상기후** 시 현장근로자 **작업중지** 및 **휴식** 제도 활성화를 통해 기후성 사고 사전예방<각 부처>

- **미세먼지·폭염** 등에 대응하기 위해 **마련된 가이드라인***의 **이행상황 점검·지도**('19.4~)<노동부>

*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('19.1월),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 이행가이드('18.5월)

○ **(심리치료 확대)** 사망사고 발생 및 사고다발 작업장 근로자의 **2차 사고예방**을 위해 **업무상 트라우마 상담센터 단계적 확대**('20~) <노동부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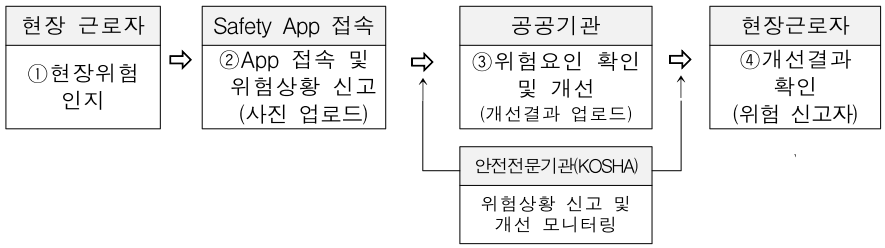
* (現) 전국 1개 센터(대구지역) → ('20) 3개 센터 추가

□ 위험상황 신고 시스템 정비

○ **(작업중지 요청제 확대)** 근로자가 **위험상황 인지**시 발주자(원청 포함)에게 직접 **일시 작업중지**를 **요청**하는 **제도**를 **모든 공공기관**으로 **확대 적용**('19.4)<기재부·각부처>

* (現) 발전 5사 적용 → (改) 모든 공공기관에 확대 적용

○ **(위험 신고제 도입)** 근로자가 **위험요소 발견 시** 개선을 실시간으로 요구할 수 있는 **모바일 앱 개발·보급**('20)<노동부>



* 위험요인을 자체 개선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노동부 행정조치 의뢰

□ 작업중지 해제 요건 강화

○ 중대재해로 인한 작업중지를 해제할 경우 **현장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**하고 **전문가**가 **참여**하는 **'해제심의위원회'를 구성·운영** (산안법시행령 개정, '20.1) <노동부>

* (現) 해제기준·절차 없음 → (改) 해제기준·절차 등을 법령에 명문화

3 [환경]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

□ 시설·설비 안전성 제고

○ 공공기관별 **안전점검**('19.1~2월)에서 지적된 사항 **이행**상황 점검<각부처>

○ **분야별 산재 예방**을 위한 **핵심 시설·설비 개선** 중점 추진

<산재 예방 핵심 시설·설비(예시)>

건설	▸ 건설 사망사고 주요 요인인 추락사고 감축을 위해 안전성이 검증된 **'시스템 작업대*' 설치 의무화**('19.7~)<국토부> * 작업발판과 난간이 일체로 조립된 작업대로 분리형 구조물(강관비계)보다 안전 * 추락 위험요소를 관리하는 '추락사고 저감대책' 별도 수립('19.4) ▸ 작업자 협착사고 방지를 위하여 **작업자 근접시 건설장비가 자동 정지**될 수 있는 시스템(장비 탈·부착식) 개발('19.4~)<국토부>
교통	▸ 유지보수공사 시 도로작업자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**설비장치* 개선**('19.4~)<국토부> * 후미경고시스템, 지향성 스피커, Ex-등대(에어간판+경광등+싸이렌) 등 도입 확대 ▸ **대형 중장비**에 작업자 부딪힘 사고 방지를 위한 **후방 카메라** 설치
전력	▸ 송전 철탑에서 추락 방지를 위해 **철탑고정형 추락 방지 장치**를 도입하고 **안전로프**(Key-Lock) 활용 확대 및 **안전발판**(Safety footing) 개발<산업부> ▸ 감전예방을 위해 전력선 **비접촉식 스마트스틱**, 활선보조기구 개발·확산<산업부> ▸ 석탄발전소 작업장 조도 확보, **컨베이어벨트 방호조치, 위험구역 출입시 경광등** 및 불시투입 방지용 **다중 잠금장치** 설치 등 설비 개선(~'19.6) * 전체 석탄발전소(60개소) 대상 임시 안전줄 및 안전커버·펜스 설치 완료('19.2월)
항만	▸ 작업 빈도가 높은 하역작업공간에 별도의 **작업안전구역***(Pinning Station)을 도입하여 중장비 운전자 및 근로자의 안전성 확보<해수부> * 선미·선수에 검수·검량, 컨테이너 고정 등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작업공간으로 실제 컨테이너 크레인 하역작업 공간에는 작업근로자 부재 ▸ 컨테이너 고정 및 고정 해제 시 고공작업에 의한 근로자들의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**'안전작업대'***(Lashing Cage) **보급**<해수부> * 항만공사별 수요조사 실시 후 가변형 안전작업대(개당 4천만원) 지원사업 추진('19.하)

□ **안전기술 개발**

○ **(스마트 안전시스템 개발) 스마트 안전관제기술**을 개발[1]하고 IoT·무인화기술을 활용한 **안전사고 예방 시스템** 구축[2] 추진('19~)

1) 구조물-지반-근로자 연계 센서, 근로자 모션 분석 등을 통해 작업 위험성을 실시간 확인·예측하는 '스마트 안전관제기술' 개발(예타 진행중)<국토부·기재부>

2) 생체인식 출입자 관리시스템, 메탄가스 원격 감시장치, 지능형 분석서버 연계 이상징후 감지 시스템 및 배전작업용 웨어러블 다기능 안전대 개발 등<산업부>

○ **(R&D 지원) 방호장치·보호구 제조업체**를 대상으로 제품의 품질과 성능 개선을 위한 **연구개발 및 시험장비 자금**지원 확대('19.상~)<노동부>

* (現) 연구개발비50%(5천만원 한도)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 50%(2천만원 한도) 지원
→ (改) 연구개발비60%(5천만원 한도) 및 시험장비 구매자금 50%(5천만원 한도) 지원

□ **위험환경 신속 대응**

○ **(수의계약 제도개선)**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해 **안전진단, 시설물 개선 등이 긴급히 필요**할 경우 경쟁입찰이 아닌 **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**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(국가계약법시행령 개정, '19.상)<기재부>

○ **(안전지도 제작)** 작업장의 **안전관리 대상 위험시설**을 소방서 등 유관기관이 쉽게 이해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**안전지도** 제작·공유('19.하~)<각부처>

* 소방서·지자체·인근 작업장 등과 이미지 파일로 공유, 평소 숙지 훈련, 사고 발생 시 현장 관리자 부재중이라도 사고 수습인력이 활용 가능

3 위험을 책임지는 협력 구조

과제 추진 방향

◈ **위험을 외주화하고 방치**하는 것이 아니라 **공공기관으로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강화**

◈ 원하청, 발주공사 등 **「기업 간 구조」의 문제**를 고려하여 **제도개선** 추진

1 [도급] 원청의 책임 강화

□ **원청의 보험료율에 하청재해실적 반영**

○ 산재보험 **개별실적요율*** 산정 시 **하청 재해 및 보험급여 지급 실적을 원청의 보험료율**에 반영하는 **대상 확대**(보험료징수법 개정, '19.하)<노동부>

* 같은 업종이라도 사업장별 산재발생 정도에 따라 보험료율을 할인·할증하는 제도

현행	적용대상 확대
건설업에 대해 적용	①산업안전보건법('20.1월 시행)에서 정하는 **도급 제한 위반시** ②파견법 제2조에 따른 **파견근로자**에게 **재해 발생**시 ③**하청 산업재해에 원청의 책임**이 있는 경우

□ **원하청 산재 통합관리**

○ 현재 5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**원·하청 산재 통합관리제***를 **공공기관**에 대해서는 **500인 미만 사업장**에도 **적용**하고, 대상업종(철도운송 등 3개)에 **전기업을 추가**('19.4)<기재부·노동부>

* 도급인 사업장의 사고사망만인율보다 도급인과 수급인의 통합 사고사망만인율이 높은 경우 ① 도급인 사업장 정보, ② 도급인별 수급인 산업재해를 합산한 사고사망재해, ③ 원·하청 통합 사고사망재해를 공표하는 제도

** 현행 3개 업종(제조업·철도운송업·도시철도운송업) **500인 이상** 사업장에 적용중이며 **전기업종**(발전업, 송전 및 배전업, 전기판매업 포함) **추가**(산안법 시행령 개정, '20.1)<노동부>

② [발주] 공사 안전관리 제도 개선

□ 공공입찰 제도 개선

○ **(안전관리 평가 강화)** 공공계약 입찰시 ① **안전관리 평가대상을 확대**, ② **고난이도 공사**의 경우 **시공계획 평가시 안전관리 역량 포함**(계약예규 개정, '19.상)<기재부>

① (現) 종합심사 낙찰제(300억 이상 공사)에 안전관리 평가 →
(改) 적격심사(300억원 미만 공사)에도 안전관리 평가 항목 신설

② 위험도가 높은 대규모·고난이도 공사계약에서 시공계획 평가의 세부항목으로 안전관리계획 항목 신설

○ **(현장관리 인력 평가)** 건설공사의 **현장관리 인력** 책임자급을 **정규직원**으로 **배치**하도록 입찰평가항목에 반영(건설기술용역 및 시공평가 지침 개정, '19.6)<국토부>

□ 공공공사 참여 제한

○ **(입찰참가자격 제한)** 사망사고 등 **중대재해 유발업체**에 대한 **입찰참가 자격 제한 강화**(산업안전보건법 및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, '20.1) <노동부·기재부>

- 도급사업(운전, 정비·보수 등)에서 입찰참가 **제한 대상**을 사망자 2명 이상에서 **사망자 1명 이상**으로 확대(건설공사는 2명 유지)

- 입찰제한 **기간**도 현행 6개월~1년6개월에서 **최장 2년으로 확대**

○ **(하도급 참여제한)** 산업재해가 다수 발생한 경우* **2년의 범위 내**에서 **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**(건산법시행령 개정, '19.7)<국토부>

* 산업재해 사망자 연간 2명 이상, 산업재해율·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상 등

- 하도급 참여제한 업체를 **건설산업종합정보망**에 **게재**하여 발주자 및 원청이 **확인**할 수 있도록 조치

□ 발주공사의 발주자 역할 확대

○ **(발주자 평가 강화) 발주자의 안전관리활동 평가*** **대상을 확대**** 하고 **평가결과도 공개**('19.12)<국토부>

* 평가내용: 안전한 공사조건 제공, 안전시스템 운영 여부, 환산재해율 등
** ('18) 57개 현장 → ('19) 170개 현장→ ('20) 공기 50% 이상, 200억 이상 모든 공사

○ **(가이드라인 적용)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**하여 계획·설계·시공 전단계에 걸쳐 안전관리활동 촉진('19.4) <기재부·노동부·각 부처>

* ('18) 발전 5사 → ('19)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

○ **(점검기관 선정)** 건설공사의 **안전점검기관***을 **시공사가 아닌 발주청**이 직접 선정하여 안전점검의 독립성 및 실효성 제고(건진법 시행령 개정, '19.7)<국토부>

* 「시설물안전법」에 의한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
* (現) 시공사가 안전점검기관 선정 → (改) 발주청이 안전점검기관 선정

○ **(벌점부과 대상 확대) 발주청**이 부실공사에 대해 **벌점을 부과**할 수 있는 **대상**을 **모든 공사로 확대***(건진법시행령 개정, '19.7)<국토부>

* (現) 50억 이상 공사에 적용 → (改) 모든 공사에 적용(벌점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감점요인)

□ 다단계 하도급 방지

○ **(직접 시공 확대)** 주요 시설물의 **핵심공종 직접시공***을 유도하고, 직접시공을 해야 하는 공사의 **범위 확대****(건산법시행령 개정, '19.7)<국토부>

* 1종 시설물 등에 핵심공종의 직접시공을 조건으로 계약
- (現) 국토부 산하기관 적용 → (改) 모든 공공기관 확대 적용('20~)

** (현행) 50억 미만 → ('19) 70억 미만 → ('20) 100억 미만

○ **(시공팀 명단 제출)** 공공 발주공사에 대해 **고용된 시공팀장, 근로자 명단을 제출**토록 하여 제도권 밖 **불법 시공팀 퇴출유도** (계약조건에 포함, '19.4~)<국토부>

* (現) 국토부 산하기관 적용(300억 이상) → (改) 모든 공공기관 확대 적용('20~)

3 [관리] 현장 안전관리제도 정비

□ 안전관리자 제도 개선

(1) 건설업

구분	현행	개선
대규모(800억원 이상)	2명 이상 (공사 초반과 후반에는 1명 이상)	① 안전관리자 자격 강화 ② 공사 전기간에 2명 이상 (1,500억원 이상)
중규모(120억원 이상)	1명 이상	대상 확대
소규모(50억원 이하)	3억원 이상은 재해예방기술지도 의무 (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없음)	기술지도 대상 확대

○ **(대규모공사)** ①**안전관리자 자격을 강화**(건설안전기사→건설안전기술사 등)하고, ②**공사 전기간에 2명 이상 선임***(산안법 시행령 개정, '20.1)<노동부>

* (現) 공사기간을 100으로 하여 초반 15, 후반 15에 해당하는 기간은 1명 이상 선임 → (改) 공사 전 기간에 걸쳐 2명이상 선임(1,500억원 이상 공사)

○ **(중규모공사) 안전관리자 1명 이상 선임** 대상을 공사금액 **12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**으로 확대('20.1)<노동부·각부처>

○ **(소규모공사)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**(3억원→1억원 이상) 및 **횟수**(월1회→2회) **확대**('19.4)<노동부·각부처>

- 계약 주체를 **시공업체에서 발주자로 변경**하여 책임성 강화(연구용역 후 산안법 개정, '20.1) <노동부>

(2) 非건설업

구분	현행			개선
상시 근로자 50명 이상	인원	위험업종	1명 이상, 5백명 이상은 2명 이상	전기·가스업을 위험업종에 추가
		非위험업종	1명 이상, 1천명 이상은 2명 이상	
	위탁	300명 이상	기특법*상 가능	300명 이상 외부위탁 제한 추진
		300명 미만	산안법상 가능	
상시 근로자 50명 미만	30명 이상은 안전관리담당자 선임 의무 (안전관리자 선임 의무 없음)			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대상 확대

*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

○ **(전기·가스업)** 위험업종에 준하여 상시근로자 **5백명 이상인 경우 2명 이상 선임**하는 기준 마련('19.3)<산업부>

* (現)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인 경우 2명 선임 → (改) 상시근로자 5백명 이상인 경우 2명 선임

○ **(대규모작업장)** 공공기관은 **300명 이상 작업장**(건설업 제외)에 대한 안전관리자 업무의 **외부위탁 제한 추진**('19.4)<산업부·각부처>

* (現)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외부위탁은 300명 미만 작업장에 가능하나, 기특법상 특례로 300명 이상 작업장도 가능 → (改) 공공기관은 300명 이상 작업장에 대한 외부위탁 제한 추진

* 산안법상 안전관리자 외부위탁 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기특법 개정안 기발의(한정애 의원)

○ **(소규모작업장)** 제조업, 임업 등 사고다발 업종에서 **안전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을 확대***('19.9)<노동부·각부처>

* (現) 30명 이상 작업장 → (改) 20명 이상 작업장

□ 안전관리비 제도 개선

구분	현행	개선
건설업	안전관리비(4천만원 이상 공사) 계상	대상·항목 확대
비건설업	표준 하도급계약서 적용(9개 업종)	적용업종 확대

(1) 건설업

○ **(편성대상 확대) 안전관리비를 편성**해야 하는 **대상 확대***(안전관리비 고시 개정, '19.7)<노동부>

* (現)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 → (改)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

○ **(지급항목 확대)** 첨단기술을 활용한 건설현장 **안전관리장비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**에서 **지급**할 수 있는 근거 마련(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, '19.7) <국토부>

(2) 非건설업

○ **(표준 하도급계약서)**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, 안전관리 비용의 **원청 부담** 등을 명시한 **표준 하도급계약서 적용업종 확대**<공정위>

* (現) 조선업, 경비업, 해양플랜트업, 정보통신공사업, 방송업 등 9개 업종 → (改) 연구용역 등을 거쳐 적용업종 추가('19.하)

4 [고용]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

□ **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**

↳ '17.7.20「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」발표, 3단계로 추진

○ **(1·2단계,** 기간제, 파견·용역*) **상시·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**을 **단계적으로 추진**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 확보

- 식대·상여금 등 복리후생비를 차별없이 지급하는 등 **처우개선과 체계적 인사관리를 도모**

* 1단계: 중앙행정기관, 공공기관, 자치단체, 지방공기업, 교육기관(853개소)
↳'19.2월말 기준, 17.7만명 전환 결정('20년까지 20.5만명 목표 대비 86.3%)

* 2단계: 자치단체 출연·출자기관, 공공기관·지방공기업 자회사(600개소)
↳'18.5 가이드라인 발표 후 본격 추진('19.2월말 3,743명 전환 결정)

○ **(3단계,** 민간위탁) 1·2단계와는 달리 **사무의 다양성** 등으로 인해 **일률적 기준 설정이나 구속력 있는 지침은 한계**

- 우선 민간위탁 **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**하고, 직접 수행여부는 **개별기관이 타당성을 검토**하여 적정 수행방식 등을 결정

* 정책추진방향 발표('19.2.27 현안점검조정회의): ① 근로조건 보호 **가이드라인 마련**('19 上, 노동부), ② 민간위탁 사무의 **직접수행 여부 검토**(개별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, 다만 심층 논의 필요사무는 소관부처 등에서 협의기구 구성 등 통해 검토), ③ **공공성·책임성** 강화(사회적 경제조직 참여 활성화, 수탁기관 전문성 제고 등)

□ **발전 5사 정규직 전환 추진**

○ **(연료·환경설비 운전,** 1단계) 5개 발전사 전환대상 업무를 통합한 하나의 **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 전환을 추진**

- **노사전 통합협의체**를 구성 → 전환방식·임금·근로조건 등에 대한 조속한 논의 추진

○ **(경상정비,** 3단계) **노사전 통합협의체**를 구성

- 세부업무 영역을 분석하여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**전문성 강화**방안, 근로자 처우 및 정규직화 여부 등 **고용안정성**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마련

4 민간을 선도하는 안전 인프라

과제 추진 방향

◈ 공공기관의 안전 인식, 정부의 지도감독, 안전관리규정 등 전반적인 **안전관리 시스템 개선**

◈ 「안전 인식확산 – 점검 등 이행력 확보 – 실행체계 구축」 등 **안전 인프라 체계화에 집중**

1 [인식] 안전 우선 인식·문화 확산

□ **대상별 특화교육 강화**

○ **(경영진)**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 CEO 등 **임원에 대해 '안전에 대한 책임과 역할 교육과정'**을 이수토록 권고('19.4~)<노동부·각부처>

○ **(관리자)** 발주자 및 원하청 업체 관리자에 대해 **'안전관리역량 강화교육'** 실시('19.4~)<노동부·각부처>

* 원·하청 안전관리방안, 재해예방대책 등 토론 위주 교육을 통해 실무역량 강화

○ **(안전담당자)** 안전관리자 등 안전담당 직원은 관리현장의 책임 주체가 되도록 **'현장 실무위주 교육'**을 2년 마다 이수<노동부·각부처>

○ **(현장 근로자)** 작업현장에서 발생되는 **'재해특성별 맞춤형 안전보건 수칙 준수 교육'** 강화<노동부·각부처>

* 건설공사 → 떨어짐 예방, 하수관로개·보수 → 질식예방, 생활폐기물 수거 운반 → 운반차량 끼임·부딪침 예방

** 근로자 체험형 VR 콘텐츠 안전교육(정보전달효과·몰입도가 양호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조사) 등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해 안전의식 제고

□ **안전문화의 사회적 확산**

○ **(집중 홍보)** ①**기본 안전수칙**을 강조하는 **「4·4·4 안전점검의 날」**을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게 정례화, ②**'안전작업 우수활동 경진대회'**를 개최하여 **우수기관 표창** 및 우수사례 확산<각부처·노동부>

① (예) 기본 점검의 날(4일), 추락 예방의 날(14일), 건설장비 점검의 날(24일)

② 산업안전강조주간(7월)에 실시, 공공기관별 우수사례 발표 및 공유

○ **(안전경영자회의)** 안전경영 우수사례와 정보를 공유하는 **'안전경영자회의'**에 사망사고가 많은 **'국토교통'**과 **'에너지'** 관련 **공공기관 추가**('19.7)<노동부·국토부·산업부>

* (現) 민간 4개 업종(건설, 조선, 철강·자동차, 요식 프랜차이즈)/노동부
→ (改) 민간 4개 업종 + 공공 2개 업종(국토교통, 에너지)/노동, 국토, 산업부 공동

○ **(공생협력)** 공공기관의 **하청**에 대한 **안전 책임의식 강화**를 위해 **'공생협력 프로그램*' 확대 운영**<노동부>

* 원·하청이 안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경우 클린사업, 산재예방시설 융자 등 우대
* (現) 100인 이상 제조업, 서비스업 → (改) 50인 이상 제조업, 서비스업

2 [점검] 현장 감독의 실효성 확보

□ **산업안전 감독 강화**<노동부>

○ **(3대 감독원칙)** ①**기본수칙 준수** ②**선택과 책임** ③**재발방지** 등 3대 감독원칙 하에 공공기관 작업장 감독 실시('19~)<노동부>

① 기본수칙 준수 : **3대 보호구**(안전대·안전모·안전화) **착용 집중단속**(건설현장 사망재해의 20.5%가 보호구 미착용에 기인)

② 선택과 책임 : '산업안전통합시스템'을 활용하여 산재취약 사업장 선정, 취약요소 사전 확인 → **위법사항 적발시 행·사법 조치** 및 주무 부처 통보

③ 재발방지 : 현행 작업장별 안전관리자 네트워크(SNS)를 업종별로 개편하여 **동종업종 사업장에 감독 시 미흡사항을 전파** → 해당 업종 기관의 경각심 제고

○ **(노동부 일제점검)** 그 동안 산업안전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공공기관에 대해 **근로자 사망사고가 많은 사업장**을 중심으로 **일제점검**('19~)<노동부>

* 대상: 하청업체 다수 사용 사업장 중 사망사고가 많은 200개소**(상하반기 100개소씩)**
* 내용: 기본 수칙 + 하청에 대한 원청의 안전조치 이행, 안전관리자 배치, CEO 등 임원의 관심도, 하청업체의 건의사항 이행여부 등

□ **공공기관 자체점검 내실화**

○ **CEO는 반기별 1회, 임원은 분기별 1회** 이상 작업장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소관부처에 점검결과 및 개선계획 보고<각 부처>

* 임원의 현장점검 시 노사 합동 점검반 운영 병행

○ **근로자**의 **필수 안전조치 사항**에 대한 작업장 출입 전 **사전점검***을 강화하고 안전조치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**퇴거 조치**<각 부처>

* (예) 개인보호구 미착용, 음주 여부 등 사전점검

3 [이행] 실행 체계 구축

□ **공공기관 안전관리 규정 제정**

○ **(안전관리 지침)** 공공기관이 **기업 경영**은 물론 **협력업체와 작업장 관리** 등을 **안전 중심으로 추진**할 수 있도록 하는 **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** 제정('19.3)<기재부>

○ **(법률 조기 이행)** 개정 **산업안전보건법**('20.1.16 시행)과 **건설기술진흥법**('19.7.1 시행)을 선제적으로 **조기 이행**하여 공공기관이 **안전 중심 경영을 선도**('19.4)<노동부·국토부>

◇ **산업안전보건법**

- ㅇ 설계단계부터 작업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단계별(계획-설계-시공)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제공 의무(발주자)
- ㅇ 2개 이상 공사가 같은 곳에서 작업시 발주청의 안전보건 조정자 선임 의무
- ㅇ 최소한의 안전보건 역량이 있는 적격수급업체 선정 의무(도급인) 등

◇ **건설기술진흥법**

- ㅇ 착공 전 발주청의 안전관리계획 승인의무 명확화
- ㅇ 설계의 안전성 검토(Design for Safety) 의무화
- ㅇ 발주청의 모든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등

- 대상 조항, 이행여부 점검, 시정조치 등의 근거 마련 등을 위한 **이행지침*** **제정**

* (가칭) 개정 산안법 조기이행 지침(노동부), 개정 건진법 조기이행 지침(국토부)

□ **건설·시설 안전관리 기능 효율화**

ㅇ **건설관리공사**와 **시설안전공단**을 **통합**하여 건설부터 유지·관리단계까지 안전을 전담하는 (가칭)**"국토안전감독원" 설립**('19.하)<기재부·국토부>

- 건설, 시설 분야 **안전정책**의 **집행조직**을 **일원화**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인 **안전관리 업무 추진**

ㅇ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**소규모 공공공사 현장***(50억원 이하)에 대한 현장점검 강화 등 **체계적 안전관리**('20.상)<국토부>

* 대규모 현장은 별도의 안전관리 강화규정이 旣 존재
: 안전관리자 선임(120억원 이상), 책임감리 상주(200억원, 연면적 5,000m^2 이상) 등

□ **공공기관 산재 통계 시스템 마련**

ㅇ 공공기관별 직영, 하청, 발주공사의 산재현황 등 **통계 작성 및 분석**을 위한 체계 마련('19.하)<노동부>

- 공공기관별 **매분기 사고사망 발생 현황**(하청·발주공사 포함)을 **공개**

Ⅵ. 향후 추진계획

□ **법령·지침 제·개정 추진**

ㅇ 공공기관의 **안전관리 책임 원칙**과 **주요 추진과제**를 내용으로 하는 **공공기관 안전관리 지침** 제정('19.3)<기재부>

ㅇ 개정 **산안법**과 **건진법**의 **조기 이행 지침** 제정('19.4)<노동부·국토부>

ㅇ 기타 산안법 시행령 등 개정 추진

□ **추진과제별 이행상황 집중관리**(연중)<기재부·각 부처>

ㅇ **각 부처**별로 소관 공공기관의 추진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**주기적 모니터링** 실시(분기)

ㅇ 전반적인 대책 추진상황을 **종합 점검**하고 필요시 **보완방안** 강구(반기)

붙 임 안전관리 중점기관

◇ 최근 5년간 **2명 이상 사망사고자**가 발생한 공공기관과 **산재 현황, 위험업무 정도** 등을 고려하여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지정한 기관

구분	유형 1 (24개)	유형 2 (8개)
대상	▪ 최근 5년간 **2명 이상 사망사고자** 발생 기관	▪ **산재현황**, **위험업무**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 기관
국토교통	▪ 토지주택공사 ▪ 도로공사 ▪ 철도시설공단 ▪ 한국철도공사 ▪ 인천국제공항공사	▪ 공항공사
에너지	▪ 한국전력공사 ▪ 한국수력원자력 ▪ 남동발전 ▪ 남부발전 ▪ 동서발전 ▪ 서부발전 ▪ 중부발전 ▪ 한전KPS ▪ 석유공사 ▪ 석탄공사 ▪ 가스공사	▪ 지역난방공사
환경	▪ 수자원공사 ▪ 환경공단	▪ 국립공원관리공단
농업	▪ 농어촌공사	
항만	▪ 인천항만공사 ▪ 부산항만공사 ▪ 여수광양항만공사	▪ 울산항만공사
기타	▪ 국방과학연구소 ▪ 수산자원관리공단	▪ 강원랜드 ▪ 건강보험공단 ▪ 마사회 ▪ 우체국물류지원단